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더욱 촘촘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제대로 알기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Ⅱ. 공익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Ⅲ.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Ⅳ. 공익신고 주요 처리 사례

Ⅴ.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1.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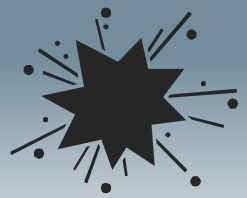
공익침해행위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



LPG
가격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 분야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1. 건강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학교급식법

-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약사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 안전분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해사안전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3. 환경분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악취방지법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4. 소비자이익 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법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 사업장을 홍보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 하는 행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방위사업법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익신고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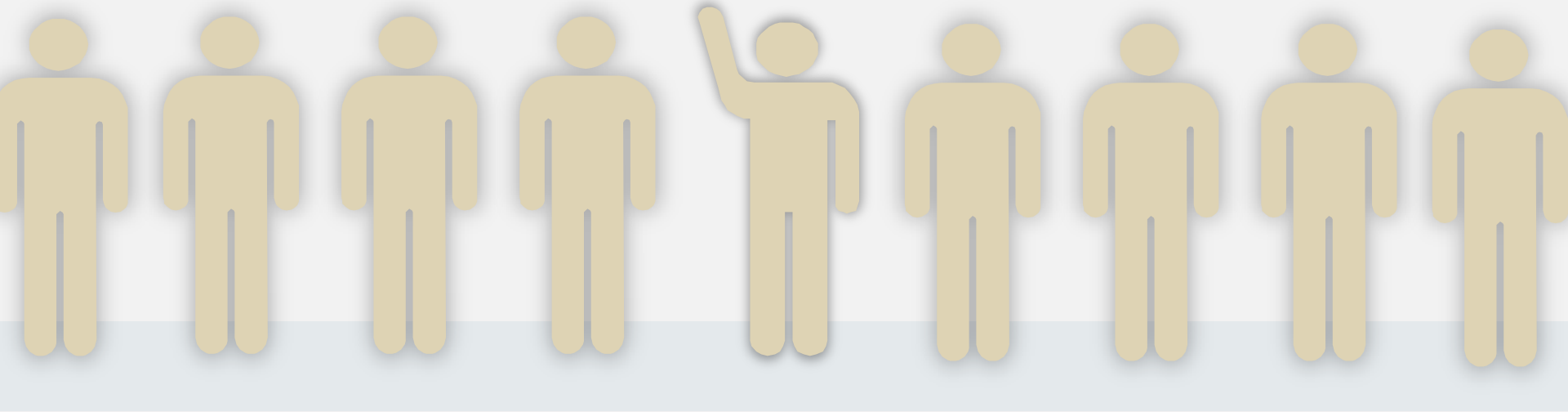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공익침해행위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행위 신고

수사기관



지방경찰서에 염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

행정 감독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고

공사 등 공공 단체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

국회의원



철도 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행위**를 신고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불법하도급 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법 제8조 제1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방법



[접수 · 처리 절차]

Ⅰ. 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 접수 ·처리 절차

접 수 (조사기관)

① 신고서 기재사항, 증거 및 신고내용 등 확인
② 공익신고 접수
③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① 공익신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확 인 (조사기관)

①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처 리 (조사기관)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관할이 아닌 경우

①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②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

[접수 · 처리 절차]

Ⅱ. 권익위 이첩 · 송부 공익신고 사건 접수 ·처리 절차

처 리 (조사기관)

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③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

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후속조치요구 (권익위)

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품회수 등)

② 재조사 요구(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조 치 (조사기관)

① 의견제시,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

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

Ⅲ. 공익신고 처리시 유의사항

비밀보장 준수

✓ 공익신고, 피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 · 공개 · 보도 금지**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에게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공익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 · 보상 제도 안내문〉 반드시 제공**

☞ **공익신고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의무규정 신설('17.10월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3.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



신변 보호 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형 ·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 · 면제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 ·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형벌 ·징계· 행정처분 하는 경우 징계권자,처분권자는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직 무 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호조치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 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참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불이익조치 9가지 유형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파면·해임·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징계 · 정직 · 감봉
강등 · 승진 제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전보 · 전근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 폭행 · 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교육 ,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인,허가 등의 취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 처분액의 4~20%를 지급 **(최대 3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	공익신고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 (이사비, 소송비, 치료비 등)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친족, 동거인)



4. 공익신고 주요 처리 사례



공익신고 주요 처리 사례

의약품 리베이트 (건강)

- OO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 공익신고('14년)
- 리베이트 지급 사실 확인 → (의사포함 총 300여명 형사입건)

도로공사 부실시공 (안전)

- 배수로 미설치 및 맨홀 주변 되 메우기 공사 미실시 등 부실시공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부실시공 확인 → (재시공 및 벌금부과)

미인증제품 제조·판매 (안전)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난간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공익신고('15년)
- 미인증 안전난간 현장설치 확인 → (수거파기 명령, 기소)

공익신고 주요 처리 사례

폐기물 불법매립 (환경)

- 폐 콘크리트를 승인 없이 공장주변에 매립한 사실 공익신고('15년)
-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사실 확인 → (고발조치 및 벌금 부과)

허위 · 과장 광고 (소비자이익)

-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 PVC 매트라고 광고하였으나 기준 초과 환경호르몬 검출의혹 공익신고('15년)
- 환경호르몬 검출 사실 확인 → (자진 리콜 실시)

가격담합 (공정경쟁)

- 자사 대리점에 대해 판매가격 및 영업구역 지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공익신고('13년)
- 대리점 가격담합 지시 사실 등 확인 → (과징금 부과)



5. 주요 법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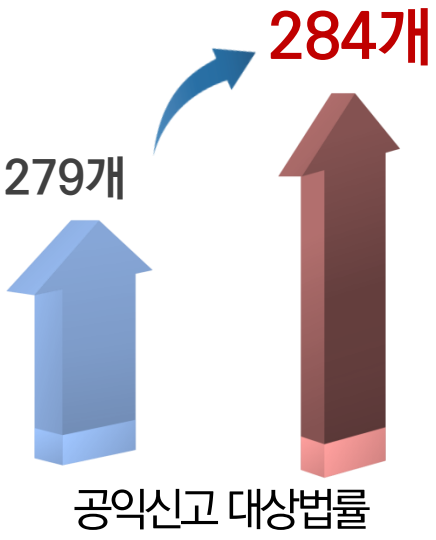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확대

대상분야 확대 (법 제2조)

*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신고대상 법률 추가 (별표)

*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법 제17조)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법 제20조)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법 제 23조)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긴급 구조금 제도(법 제27조)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법 제29조의2)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벌칙 강화(법 제 23조)

위 반 행 위	기존	개정안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시행령 제22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아무 걱정 없이 소리 낼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